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1.16 ~ `18.04.08

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8.04.09 ~ `18.04.20

- 버스장착·기동(시민신고) : `18.03.18 ~ `18.04.20

나. 통보건수 : (주)에이치디렌트카 등 5,012명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버스장착형)	시민 신고	서손 건수	제외사유
금회	5,529	5,012	4,774	188	55	517	-연속단속 -면제차량
전회 누계	62,855	43,191	41,816	1,073	302	19,664	-진입구간 짧음 -자납
누계	68,384	48,203	46,590	1,256	357	20,181	-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8.04.24 ~ `18.05.14(20일간)

- 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  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